

【 6 】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6. 1. 25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○ 회천읍 덕계, 회정지역의 인구가 전지역의 51%에 달하는등 각종민원 및 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덕계 현장 중계민원실의 업무가 한정되어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코자 함.

주요골자

가. 명칭을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라 칭하고 관할구역을 덕계리 및 회정리 전 지역으로 함 (안 1~2조)

나. 출장소의 업무를 읍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중에서 분장함 (안3조)

다.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키위해 출장소장 및 공무원을 둠 (안 4~5조)

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

제1조(설치) 회천읍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하고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회천읍덕계출장소 (이하'출장소'라 한다)를 둔다

제2조(명칭,위치 및 관할구역) 출장소의 명칭,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회천읍 덕계출장소	양주군 회천읍 덕계리	덕계리 전지역, 회정리 전지역

제3조(업무) 출장소의 관장업무는 읍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4조(소장)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

②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